

퇴직 후, **당당하게 퇴직하세요!**
공정하게 시작하세요!
떳떳하게 일해주세요!

청렴한 공직자의 품격 퇴직 후에도 함께합니다

경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



접속주소 | <https://www.gg.go.kr/audit/>
문의전화 | 031-8008-2973(취업 심사)
031-8008-3846(재산변동 신고)
031-8008-2089(기타 제도 안내)
031-230-4535(소방직 안내)

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



접속주소 | <https://www.peti.go.kr/>
상담센터 | 1522-4273

05. 부정한 청탁·알선 행위 금지 의무

부정한 청탁·알선 행위 금지 의무란? (법 제18조의4)

의무 대상

- 퇴직한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

금지 행위

-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,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

위반 시 제재

-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(법 제29조제3호)

참고 청탁금지법(국민권익위)의 부정청탁 행위 유형(제5조 제1항)

※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됨.

- ① 인가·허가·면허·승인 검사 등에 대한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
- ②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·면제하도록 하는 행위
- ③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해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
- ④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
- ⑤ 공공기관 주관의 수상, 포상, 우수자 선발 등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·단체 등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
- ⑥ 입찰·경매·개발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
- ⑦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·단체 등이 계약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
- ⑧ 보조금·장려금·기금 등을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·단체에 배정·지원하거나 투자·예치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
- ⑨ 공공기관이 생산·공급·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·단체 등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·점유하도록 하는 행위
- ⑩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·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등
- ⑪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·단속 등 조사 대상에서 특정개인 및 단체를 선정·배제되도록 하거나, 조사 결과를 조작 또는 묵인하게 하는 행위
- ⑫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 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 받은 지위·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

06. 이해충돌 방지 및 비밀엄수 의무

이해충돌 방지 의무란? (법 제2조의2)

-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개인 또는 기관·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되고,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,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토록 해서는 안 됨
- 또한, 퇴직 후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

비밀엄수 의무란? (국가공무원법 제60조)

- 모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됨(단,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)

참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범위

- ①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
- ②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
- ③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
- ④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

청렴의 의무란? (국가공무원법 제61조)

- 모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·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음



경기도

한눈에 보는

퇴직 후 반드시
지켜야 할
행위(제한) 의무

공직자윤리법

새로운 시작과 빛나는 미래를
응원합니다



경기도 감사위원회

01. 재산변동 사항 신고

재산변동사항 신고란? (법 제6조)

신고 대상

-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(4급이상 공직자)
 - ※ 특정분야(감사, 회계, 인허가, 조세, 부동산 유관부서 등)는 5급 이하 공직자도 대상임

신고 내용

- 최종 재산신고 기준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재산변동 사항

신고 기간

-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

신고 방법

- 공직윤리시스템(www.peti.go.kr) 로그인 후 신고

위반 시 제재

- 재산등록을 거부한 경우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24조제1항)
- 재산등록을 기간 내에 마치지 아니한 경우 :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법 제30조제3항제1호)

참고 1 취업승인 사유 (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)

-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
- 직제와 정원의 개정·폐지,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
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소지자로서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-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
-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문직,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
-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
-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·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
-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·자격증·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

02. 취업제한 제도

취업제한 제도란? (법 제17조 및 제18조)

-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**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간 소속**하였던 부서(3급 이하) 또는 기관(2급 이상)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‘취업심사대상기관(인사혁신처 고시)’에 취업이 제한됨

- 단,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
 - 1 취업제한여부에 대해 확인받거나
 - 2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 가능

〈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〉

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(심사대상기관) 간 밀접한 관련성(참고 2) 여부를 심사
⇒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‘취업가능’

〈취업승인 심사〉

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(참고 1) 해당 여부를 심사
⇒ 취업승인 사유가 인정되면 ‘취업승인’

- 신청시기 : 취업 개시 30일 전

임의 취업 시? (법 제19조제1항, 제29조제1호, 제30조제3항제8호)

-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사후적인 취업심사를 통해 업무관련성이 확인된 경우
 - ‘취업제한’ 결정 및 ‘취업해제’ 조치
 - 고발*여부 심사 *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
취업심사 대상기관은? (법 제17조제1항)

- 인사혁신처 고시 대상기관(’25.12.31.) : 26,285개
 - (영리, 건축·건설, 특정분야) 22,144개(비영리) 4,141개
 - (그 외 ’26.6.30. 협회 추가 고시) 1,411개
 - ※ 道 공공기관 지정(5) : 경기교통공사, 경기평택항만공사, 경기도의료원, 경기도농수산진흥원,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
 - ※ ’26.1.1.부터 건축·건설분야(설계, 감리)의 취업심사대상기관 확대
- 대상기관 조회 : 공직윤리시스템(PETI)
 - 취업·행위제한 ▶ 취업심사대상기관(기관명-조회)

03. 업무취급제한 제도

업무취급제한 제도란? (법 제18조의2)

- 모든 공직자(재산등록 여부 및 직급 무관)는 재직 중 재정 보조, 인·허가 등 업무를 직접 처리했다면 취업한 기관에서 해당 업무의 취급이 영구적으로 제한됨
- 특히,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직 중 직접 처리했던 업무 외에도 퇴직 전 2년간 소속기관이 ‘취업심사 대상기관’에 대해 처리한 ‘취급제한 업무(참고2)’를 맡는 것이 제한됨
- 다만,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취급 승인 심사를 받아 공공의 이익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업무취급이 가능함

- 신청시기 : 제한업무 취급 전(취업 전, 후 모두 가능)

업무취급 승인 대상 업무는?

본인업무기준 심사대상자(3급 이하 모든 공직자)

- ▷ 재직 중 직접 처리했던 ‘취급제한 업무(참고 2)’

기관업무기준 심사대상자(2급 이상 모든 공직자)

- ▷ 재직 중 직접 처리했던 ‘취급제한 업무’ + 퇴직 전 2년간 소속 기관과 ‘취업심사 대상기관’ 간 처리한 ‘취급제한 업무(참고 2)’

〈업무취급승인 심사〉

업무취급 제한에도 불구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

- 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서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
- ②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받은 경우 취급이 가능

제도 위반 시? (법 제29조제2호, 제30조제1항)

- 본인이 직접 처리한 ‘취급제한 업무’를 취급한 경우
 - 고발*여부 심사 *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
- 퇴직 전 2년간 소속기관과 ‘취업심사 대상기관’간 처리한 ‘취급제한 업무’를 취급한 경우
 -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04. 업무내역서 제출 및 취업사실 신고

업무내역서 제출? (법 제18조의3)

-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후 2년간 취업한 기관(심사대상기관)에서의 업무내역서를 제출해야 함
 - 퇴직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개월 이내, 2년 경과 후 1개월 이내(2회 제출)
- 업무내역서 미제출 및 거짓 제출 시 제재
 -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법 제30조제3항제9호)

취업사실 신고 및 취업이력공시란? (법 제19조의4)

-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후 10년간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함
-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이력을 조사하여 다음해 6월 30일까지 공시(소속기관 대표 누리집)
- 취업사실 1개월 이내 미신고 시 제재
 -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법 제30조제3항제11호)



참고 2 밀접한 관련성 범위 (법 제17조 제2항)

- 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·장려금 등을 배정·지급하는 재정 보조를 제공하는 업무
- ② 인가·허가·면허·특허·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③ 생산방식·규격·경리 등에 대한 검사·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④ 조세의 조사·부과·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⑤ 공사·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·검사·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
- ⑥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
- ⑦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·심판과 관계되는 업무
- ⑧ 업무처리 방법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